

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762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1. 30

1. 안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

2. 심사경과

의안번호	제출일자	회부일자	상 정 내 역 (상정일자)	심사결과
762	2009.1.30	2009.2.4	제21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(2009.2.19)	원안 동의

3. 제안이유 및 요지 (도시계획국장 송득범)

가. 제안 이유

- 「도시공원법」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로 전면개정(2005.10.1 시행)되면서 도시공원이 다양하게 세분됨에 따라 기존공원에 대한 주변여건 및 이용기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도시공원의 세분사항을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도시공원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나. 주요 요지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(안)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 (공원명)
		당초	변경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공원	근 린	소공원	중구 무교동 97-2	570.2	-	570.2	2001. 3.31	무 교
		어린이	소공원	중구 순화동 11일대	1,071.6	-	1,071.6	1973. 9.6	순 화
		어린이	소공원	중구 의주로1가 44-2일대	1,012	-	1,012	1978. 12.29	의주로
		어린이	소공원	중구 정동 1-73일대	713	-	713	1985. 1.6	진달래
		어린이	소공원	중구 태평로1가 2-2일대	1,245.4	-	1,245.4	2001. 4.12	무 교
		어린이	소공원	중구 신당동 432-1918일대	337	-	337	2005. 8.19	마 루
		어린이	소공원	광진구 구의3동 589-4	95.2	-	95.2	1971. 11.26	구의 가로휴식
		어린이	문화	서대문구 대현동 146번지	3,063.9	-	3,063.9	2002. 3.18	대 현
		어린이	문화	서대문구 창천동 57-18번지	2,326.9	-	2,326.9	1938. 11.8	창 천
		묘지	역사	동작구 노량진동 152-3번지 외 73필지	47,832	-	47,832	1956. 5.3	사육신
		근린	역사	송파구 방이동 125번지 일대	30,293.7	-	30,293.7	1986. 3.17	방이동분
		근린	역사	송파구 석촌동 248번지 일대	45,137.8	-	45,137.8	1986. 3.17	백제초석
		묘지	근린	동작구 동작동 산30-7호 외 526필지	0	증) 1,093,388.1	1,093,388.1	1962. 12.20	현 총
		묘지	묘지		2,038,741.3	감) 1,093,388.1	945,353.2	1962. 12.20	

4. 도시관리계획사항

- 제1종일반주거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, 일반상업지역, 공원, 자연녹지

5.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(안)에 대한 의견청취

- 주민의견청취 (2009.1.19~2.2) : 의견 없음.

6. 관련부서 의견

- 의견 없음.

7.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

- 공원주변여건 및 이용기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공원의 세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8. 기 타

- 토지현황 : 622필지 1,227,626.8㎡
  - 국 유 지 : 204필지 553,749.9㎡ (45.1%)
  - 공 유 지 : 194필지 269,650.8㎡ (21.9%)

- 사유지 : 225필지 404,226.1㎡ (33.0%)
- 건물현황 : 103동 6,800㎡
- 재원조달방안 : 33,350백만원 (푸른도시국 확보)
  - 보상비 : 31,312백만원
  - 공원비 : 2,038백만원

9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종식)

- 본 안건은 중구 무교동 97-2번지 외 12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의 유형을 변경 결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입안하여 결정 요청한 사안임.
  - 이는 「도시공원법」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로 전면개정(2005.10.1 시행)되면서 도시공원이 세분됨에 따라 기존공원에 대한 주변여건 및 이용기능 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정에 맞게 공원의 세분사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목적임.
  - 참고로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크게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하며, 생활권공원에는 소공원, 어린이공원, 근린공원이 있고, 주제공원으로는 역사공원, 문화공원, 수변공원, 묘지공원, 체육공원, 생태공원, 놀이공원이 있으며, 각 공원의 분류 및 개념은 붙임과 같음.
- 첨부된 공원별 세분류 변경사유서와 같이 총 13개소의 공원 변경안은 대체로 주변여건 및 이용기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사료됨.
  - 변경되는 공원의 유형을 정리하면, 7개소는 소공원, 문화공원 2개소, 역사공원 3개소로 각각 변경되며, 동작구 동작동 산30-7번지 일대 국립현충원 묘지공원은 일부 지역(1,093,388.1㎡)에 대하여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임.
- 국립현충원 묘지공원의 변경과 관련하여 보완하여 말씀드리면, 공원 전체 면적 203.9ha 가운데 담장으로 경계된 현충원 부지 94.5ha는 그대로 묘지공원으로 하고, 담장 외곽지역에 대하여는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  - 이는 변경 대상지 일대가 이미 시민들의 산책, 휴식, 운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, 담장 외곽의 공원 지역까지 묘지공원으로 유지할 경우 공원시설 설치 제한으로 시민들의 공원이용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 기인함.
  -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국립현충원 묘지를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의 건물이나 시설물이 건립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여 공원 변경에 동의(2004.10.28)하였고, 서울시투자심사결과(2007.10)에서도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하고, 자연회복을 위한 수목식재 위주의 공원 조성을 조건부로 투자심의를 완료한 점에 비추어볼 때 묘지공원 일부 변경은 검토가능하다고 판단됨.

10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특이사항 없음.

11. 토론 요지

- 특이사항 없음.

12. 심사 결과 : 원안 동의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□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원의 분류 및 개념

공원구분	개 념
<p>1. 생활권 공원</p> <p>가. 소공원</p> <p>나. 어린이공원</p> <p>다. 근린공원</p> <p>(1) 근린생활권근린공원</p> <p>(2) 도보권근린공원</p> <p>(3) 도시지역권 근린공원</p> <p>(4) 광역권근린공원</p>	<p>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·관리</p> <p>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 도모</p> <p>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</p> <p>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·휴양·정서생활 향상에 기여</p> <p>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</p> <p>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</p> <p>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</p> <p>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</p>
<p>2. 주제공원</p> <p>가. 역사공원</p> <p>나. 문화공원</p> <p>다. 수변공원</p> <p>라. 묘지공원</p> <p>마. 체육공원</p> <p>바.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</p> <p>(1) 생태공원</p> <p>(2) 놀이공원</p>	<p>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</p> <p>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, 유적·유물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 목적</p> <p>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 목적</p> <p>도시의 하천변·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·휴식 목적</p> <p>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구역 안에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</p> <p>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 배양 목적</p> <p>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3조</p> <p>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·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</p> <p>각종 놀이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</p>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## □ 공원별 세분류 변경사유서

공 원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무교근린공원 (중구 무교동 97-2)	• 공원세분변경 : 근린 → 소공원 • 면적 : 570.2㎡	• 면적이 협소하여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 유지가 곤란하므로 • 인근 주민들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소공원으로 변경함.
순화어린이공원 (중구 순화동 11일대)	• 공원세분변경 : 어린이공원 → 소공원 • 면적 : 1,071.6㎡	• 도로변 및 업무시설 주변에 위치하며 녹지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음.  (어린이 놀이시설이 미설치되어 있고 공원 주변에 상주하는 어린이가 상대적으로 적어 어린이들의 이용이 거의 없는 곳임) • 소공원으로 변경하여 인근 업무시설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.
의주로어린이공원 (중구 의주로 1가 44-2일대)	• 공원세분변경 : 어린이공원 → 소공원 (변경) • 면적 : 1,012㎡	
진달래어린이공원 (중구 정동 1-73일대)	• 공원세분변경 : 어린이공원 → 소공원 • 면적 : 713㎡	
무교 어린이공원 (중구 태평로 1가 2-2일대)	• 공원세분변경 : 어린이공원 → 소공원 • 면적 : 1,245.4㎡	
마루 어린이공원 (중구 신당동 432-1918일대)	• 공원세분변경 : 어린이공원 → 소공원 • 면적 : 337㎡	
구의가로휴식 어린이공원 (광진구 구의3동 589-4)	• 공원세분변경 : 어린이공원 → 소공원(변경) • 면적 : 95.2㎡	
대현어린이공원 (서대문구 대현동 146번지)	• 공원세분변경 : 어린이공원 → 문화공원 • 면적 : 3,063.9㎡	

공 원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창천어린이 공원 (서대문구 창천동 57-18번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원세분변경 : 어린이공원 → 문화공원</li> <li>• 면적 : 2,326.9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업무시설 주변에 위치하며 주변에 상주 어린이가 상대적으로 적어 어린이공원으로써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,</li> <li>• 공원인근에 위치한 대학(연세대 등) 등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공원의 이용측면에 맞추어 변경함.</li> </ul>
사육신묘지 공원 (동작구 노량진동 152-3외 7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원세분변경 : 묘지공원 → 역사공원</li> <li>• 면적 : 47,832㎡</li> </ul>	조선전기의 역사적인 유적지이나 일반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어 역사적 문화공간으로 정비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행정적인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문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.
방이동고분 근린공원 (송파구 방이동 125일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원세분변경 : 근린공원 → 역사공원</li> <li>• 면적 : 30,293.7㎡</li> </ul>	국가지정문화재(사적 제270호)인 방이동고분이 포함되어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이용상황에 부합되도록 역사공원으로 변경하여 도시민의 휴식,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및 관리 필요함.
백제초기 적석총 근린공원 (송파구 석촌동 248일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원세분변경 : 근린공원 → 역사공원</li> <li>• 면적 : 45,137.8㎡</li> </ul>	국가지정문화재(사적제243호)인 석촌백제초기 적석총이 포함되어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어 이용상황에 부합되도록 역사공원으로 변경하여 도시민의 휴식,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및 관리 필요함.
현충묘지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원세분변경 : 묘지공원 → 근린공원</li> <li>• 면적 : 0㎡ → 1,093,388.1㎡(증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국립현충원 외곽지역으로 동 지역은 주민생활권과 밀접하여 많은 시민들의 산책, 휴식, 운동공간으로 이용하고 실질적인 근린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음.</li> <li>• 현충원의 확장계획이 없으며 묘지공원내 공원시설 설치 제한으로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근린공원으로 변경 쾌적한 공원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.</li> </ul>